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형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봉희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11월 22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변경(안 제1조)

나. 위원회 간사를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3항)

다.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2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2738호(2014.6.3.)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 ‘지역개발과장’이 담당하는 위원회 간사를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